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제도

유 연 갑*

I. 개 요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이하 “경협손실보조”라 한다)제도는 국내기업이 북한지역에 투자한 후, 북한당국의 수용·송금제한·당국간 합의파기 등 비상위험(Political Risk)으로 인하여 사업불능 또는 중단, 권리침해 등의 피해를 입게 되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조하여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남한주민이 북한당국에 의한 예기치 못한 조치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손실을 보조해 줌으로써 대북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위험경감상품이며,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어려운 대북투자 위험을 커버함으로써 제3국 투자의 경우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

는 정책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손실에 대해 보조하는 것은 아니고 발생손실이 남한주민에게 귀책되지 않는 사유로 발생하였고, 기금과 사전에 약정한 담보위험의 범주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손실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부 지급방식을 취하고 있다.

당초 손실보조제도는 지난 1991년 남북협력기금이 처음 조성되면서 남북협력기금법령¹⁾에 따라 함께 마련되었지만 세부기준의 미비, 남북관계 불확실성 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관련업계에서 제도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고, 특히 2003년 8월 남북간 4대 경협합의서²⁾ 발효를 계기로 통일부가 민간경협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제도시행을

* 한국수출입은행 책임심사역

1)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등
2) 남북간 4대 경협합의서는 투자보장 합의서, 이종과세방지 합의서, 상사분쟁해결절차 합의서, 청산결제 합의서 등을 말하며, 2000년 12월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서명되었고 2003년 6월 국회 동의 및 8월 발효통지문 교환을 거쳐 발효되었다.

결정함에 따라 구체적 기준³⁾을 마련하여 시행⁴⁾하게 되었다.

II. 경협손실보조의 대상투자 및 종목

1. 대상투자

경협손실보조는 통일부로부터 경제협력사업⁵⁾ 승인을 받은 투자 또는 권리취득을 대상으로 한다.

2. 종 목

경협손실보조는 투자형태에 따라 「지분 등 투자손실보조」, 「대부등 투자손실보조」, 「권리등 투자손실보조」 등으로 구분하여 운용된다.

(1) 지분등 투자손실보조

남한주민이 북한법인의 지분 또는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한 후, 당해 북한법인의 계속사업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투자원금 또는 실현된 배당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조한다.

(2) 대부등 투자손실보조

남한주민이 지분 또는 주식의 소유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북한법인에 대한 사채, 이에 준하는 채권 또는 당해 북한법인에 대한 장기대출금 채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 후, 투자(대출)원금 또는 약정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조한다.

(3) 권리등 투자손실보조

남한주민이 북한지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 또는 광업권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위탁가공용설비를 반출한 후 취득대금 또는 반출당시 평가금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조한다.

III. 경협손실보조의 약정내용

1. 피약정자

기금과 약정을 맺은 당사자가 피약정자이

3) 약관(교역손실보조 약관 3종, 경협손실보조 약관 3종) 및 실무취급기준(약정, 지급 등)

4) 남북간 교역거래에 대한 손실보조제도(교역손실보조)는 2004년 5월 14일, 대북투자에 대한 손실보조제도(경협손실보조)는 2004년 9월 23일자로 시행되었다.

5) “경제협력사업”이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남한주민이 단독으로 또는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북한지역에 투자하여 회사, 단체, 기타 기구를 설립하고, 사업수행결과 발생한 이윤을 투자비율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분배받기로 하거나 투자금을 계약조건에 따라 상환받기로 하는 행위로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에 따라 통일부로부터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사업을 말함.

경협손실보조의 대상

구 분	대 상 투 자
지분등 투자 손실보조	- 지분 또는 주식의 취득
대부등 투자 손실보조	-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금채권 또는 사채의 취득
권리등 투자 손실보조	- 부동산 또는 광업권 등 권리의 취득 - 위탁가공용 설비의 사용권리의 취득

- 주 : 1. “지분등 투자”는 ① 북한지역에 설립된 또는 설립중인 피투자회사등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피투자회사등에 대하여 출자총액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 또는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미 투자한 피투자회사등에 대한 출자지분의 추가 취득을 포함)과 ② 경협사업자가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100분의 2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고 피투자회사의 대표자, 이사, 기타 경영의 기본방침을 결정하는 자위에 있는 자를 파견한 경우를 말한다.
- 주 : 2. “대부등 투자”는 이미 지분투자의 형태로 경협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협사업자가 당해 피투자회사 등의 사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을 취득하거나 당해 피투자회사등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 주 : 3. “권리등 투자”는 ①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설비에 관한 권리, 광업권, 공업소유권, 기타의 권리 등을 취득하는 것과 ② 가공임 상계방식의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위탁가공용설비를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다. 피약정자는 손실보조금 수취인과 동일인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제3자를 지정하여 수취하게 할 수도 있다.

경협손실보조 약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남한주민으로서 동종업종 종사경력과 3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담보하는 위험

경협손실보조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수용 위험, 전쟁위험, 송금위험, 약정불이행위험 등 북한의 비상위험에 한하고 있다. 수용위험은 북한당국에 의한 투자재산의 몰수·박탈 또는 북한당국의 권리행사 침해에 따른 투자사업의 불능, 파산 또는 6월 이상의 사업정지를 말하며, 전쟁위험은 전쟁·혁명·내

란 등 북한에서의 정변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파산 또는 6월 이상의 사업정지를 말한다. 송금위험은 북한당국에 의한 취득금 관리, 북한당국이 실시하는 환거래 제한·금지, 전쟁·혁명·내란 등 북한에서의 정변으로 인한 환거래 불능 등의 사유로 인한 2월 이상의 송금불능을 말한다. 약정불이행 위험은 북한당국의 일방적인 남북당국간 합의의 파기·수정 또는 북한당국이 당해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약정(사전에 기금이 인정된 것에 한함)한 내용의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파산 또는 6월 이상의 사업정지를 말한다.

비상위험은 투자당사자에게 있어서 불가항력일 뿐만 아니라 손실의 보상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의 손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남은 투자자의 투자이익을 고취시킬 수 있다.

3. 손실보조비율

기금은 담보위험에 의해 발생한 손실액의 70~90%를 보조한다. 개성공업지구는 90%, 기타북한지역은 70%를 손실보조비율로 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보조비율이 높게 책정된 이유는 개성공업지구는 북측의 개성공업지구법에 의해 투자자산이 보장되고, 남측과 같은 수준의 투자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타 지역보다 사고위험이 낮고 손실액 사정이 용이한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개성공업지구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투자환경이 개선될 경우 손실보조비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4. 약정가액 및 약정금액

약정가액은 약정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평가액을 말한다. 지분등 투자손실보조의 경우는 지분등의 투자원금이 약정가액이 된다. 대부등 투자손실보조의 경우는 대부등의 원금 또는 이자금액이 약정가액이 되며, 권리등 투자손실보조의 경우는 권리등의 취득원금 또는 반출당시 평가금액이 약정가액

이 된다. 투자송금일은 지분, 대부, 권리 등의 투자금(유상증자를 위한 투자원금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 투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송금하거나 반출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무상증자인 경우에는 무상증자일, 선행투자자금(기술지도, 노하우 등 용역을 제공하거나 피투자회사 등 설립이전에 자금을 송금 또는 물품을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선행투자자금이 피투자회사 등의 지분 등에 전입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약정금액은 사고발생시 기금이 피약정자에게 지급할 손실보조금의 최고한도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기업당 약정금액은 20억원 범위내로 하고 있다. 약정금액은 약정가액에 손실보조비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수수료도 이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경험손실보조는 순손실에 대한 보조제도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보조의 대상이 되는 순손실액을 먼저 산정하여 그 손실액의 70~90%를 보조한다. 한편, 약정기간은 1년 단위로 하여 약정금액을 설정하고, 기금이 보조하여야 할 금액이 약정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약정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실보조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피약정자는 약정신청 당시에 약정금액과 손실보조금과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정금액을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약정금액은 투자원금과 과실액(果實額)

(배당금 또는 이자. 권리투자에 대해서는 과실액이 없으므로 투자원금만 해당된다)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투자원금의 약정금액은 지분 또는 대출금채권, 사채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투자액에 손실보조비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 권리등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감안하여 그 예상감가상각액만큼을 매년도 약정금액 산정시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과실액에 대한 약정금액도 각 연도의 발생예상액에 손실보조비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 이처럼 손실보조비율을 곱한 금액을 약정금액으로 하는 것은 보조비율 이상으로 약정금액을 책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과실액에 대한 약정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지분등의 경우는 지분등의 예상배당금총액이 투자원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출금채권 및 사채 등의 투자원금이 분할상환되는 경우는 상환되는 원금을 각 약정년도마다 차감하여 약정금액을 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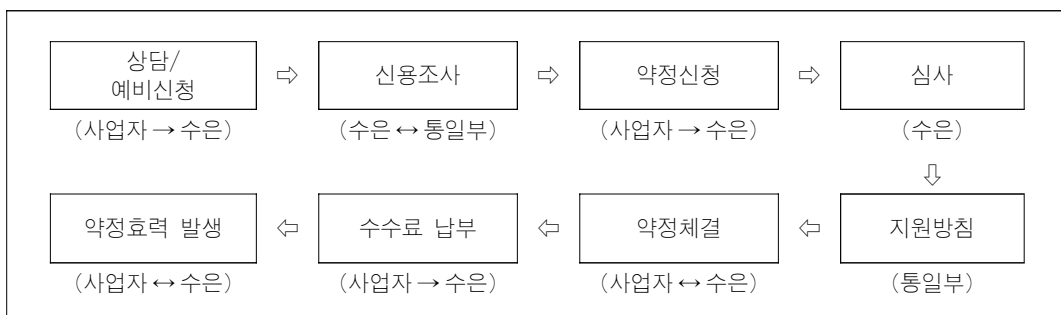
5. 약정기간

경협손실보조의 약정기간은 최장 10년 이내에서 투자자가 결정하되, 매 1년을 단 위기간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최초사업년도에 대해서는 송금일로부터 송금일 다음 회계년도 말일까지를, 그 익년도부터는 매 사업년도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약정기간으로 하며, 최종사업년도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초일부터 채권상환만기일까지를 약정기간으로 한다.

6. 약정절차

손실보조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우선 신용조사를 의뢰한 후, 담보하고자 하는 위험범위에 관하여 당행과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소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손실보조 약정은 당행의 약정심사와 통일부의 결정에 따라 체결된다. 피약정자가 산정된 수수료를 납부기일내에 납부함으로써

〈그림 1〉 약 정 절 차



써 비로소 손실보조약정의 효력은 발생하게 되며, 이때 해당 약관과 약정증서를 교부한다.

(1) 예비신청

대북투자자는 대북투자를 추진하는 단계부터 추진계획, 투자개요 등에 대하여 기금과 상담할 수 있으며, 사업의 필요에 따라 예비신청을 통하여 기금으로부터 약정가능여부 판단 및 서면의견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다만, 서면의견서는 약정승인 이전의 약정가능여부에 대한 법적구속력 없는 의견을 인지해야 한다.

예비신청은 투자송금일전에 예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합작·합영투자의 경우 합작·합영 투자계약상대방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약정신청

신규사업 투자에 대한 약정신청과 기약정투자의 증자에 대한 약정신청은 투자송금일로부터 원칙적으로 1월 이내에 약정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기금에 제출한다. 투자자가 이미 완료된 대북사업에 대한 약정신청은 ① 피투자회사등에 대한 기금 또는 기금이 정하는 자에 의한 실사 또는 확인 실시와 ② 피투자회사의 평가결과 자본잠식 상태에 있지 않을 것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손실보조 약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약정심사 및 승인

약정신청서를 접수한 기금은 남북한 관계기관의 인허가서,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환경, 투자사업계약 및 경험사업과 관련한 북한당국의 약정내용, 약정기준 합치여부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기업에 통보한다.

(4) 수수료 납부

피약정자가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약정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때 해당 약관과 약정증서를 교부한다. 수수료는 약정금액에 소정의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수수료율은 기본요율에 할인 또는 할증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25%를 할인한다.

최초사업년도 수수료는 투자송금일부터 투자송금일 다음 회계년도(피투자회사등의 회계년도를 말한다) 말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약정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납부토록 하며, 동 수수료를 수납하였을 경우 약정증서를 발급한다.

계속사업년도 수수료는 최초사업년도 다음 회계년도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매 1년을 단위기간으로 하여 전회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납부토록 한다. 다만, 최종사업년도 수수료는 당해 회계년도의 초일부터 채권상환만기일까지의 기간 등 1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수납할 수 있다.

(5) 약정의 변경

피약정자가 약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약정내용변경신청서에 내용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기금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피약정자의 의무

(1) 결산관련서류 및 보장각서의 제출의무

피약정자는 최초사업년도를 제외한 매 회계년도초에 남한의 공인회계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증명한 피투자회사등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기타 결산관계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합작·합영투자의 경우에는 피투자회사 명의의 실사보장각서(기금 또는 기금이 정하는 자가 필요한 경우 피투자회사에 대한 실사 또는 확인을 보장하는 내용의 각서)와 투자계약상대방 명의의 대위권보장각서(손실보조금 지급시 기금에 의한 대위권 행사를 보장하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고지의무

약정신청시 기금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약정승인하지 않았을 중요한 사실(피약정자나 기금이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는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약정체결후에도 피약정자나 기금이 손실을 받을 우려가 있는 위험이 증가되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기금에게 빠짐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3) 손실발생의 통지의무

피약정자는 약정내용의 담보하는 위험에 의해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기금에게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에 의하여 기금은 손실의 방지 또는 경감 등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동시에 사고조사 준비를 한다.

(4) 내용변경의 통지의무

피약정자는 투자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기금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약정의 대상인 대북투자의 내용변경으로 약정의 내용변경이 필요한가 등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조치이다. 투자금액의 변경에 따른 약정금액의 증액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도 약정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손실의 방지 또는 경감의무

피약정자는 손실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미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배상청구권의 행사 또는 그 권리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기금이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피약정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피약정자가 동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금액 또는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실금액에서 공제한 잔액을 기초로 하여 보조액을 결정한다.

(6) 조사에 응할 의무

피약정자는 기금이 계약 기타 약정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계약 관련 장부, 서류를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손실보조금 지급시의 특정 조건, 회수금에 대한 채권보전상 필요한 피약정자의 의무 또는 자산의 내용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료의 제출 및 조사는 손실사정에 있어서 부정이 개재되는 것을 방지하며 또한 회수금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다.

8. 약정의 무효, 실효 및 해지

피약정자가 약정의 신청 당시 또는 약정이 체결된 후에도 사실고지, 수수료의 납부

또는 계약내용변경의 통지 등 마땅히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약정의 무효, 실효 및 해지 등 조치를 취한다.

(1) 고지의무위반

약정의 신청시에 신청자가 손실을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기금에 고지하지 않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기금은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2) 대북투자사업의 변경

피약정자가 대북투자사업에 관하여 중대한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기금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기금이 그 내용을 원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심사한 결과 원 투자사업보다 피약정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되었을 때에는 기금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피약정자가 투자의 내용을 변경한 후 그 내용변경의 통지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을 때부터 약정이 실효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3) 수수료의 미납

피약정자는 약정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기금이 지정한 날까지 약정기간의 최초사업년도 수수료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에는 약정의 효력을 잃는다. 그 외에 계속 사업년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의 개시일 이후 장래에 대하여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4) 수수료의 환급

약정의 내용변경 승인에 의해서 약정기간이 단축되거나 약정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기금이 책임지지 않게 된 부분에 대한 수수료의 90%를 환급한다.

약정이 무효, 취소, 해지 또는 해제됨에 있어 기금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수납한 수수료의 전액을 환급한다. 다만 기금 및 피약정자에게 공히 책임지울 수 없는 경우에는 기금이 책임을 지지 않게 된 부분에 대한 수수료의 90%를 환급한다.

위험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약정자는 그 사실을 통지하고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거래당사자의 귀책 여부, 원인조사, 손실액 사정 등에 관하여 심사를 하고 통일부의 지급 결정이 있게 되면 손실보조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조금은 통상 지급신청 후 3개월 이내 지급한다.

1. 사고발생 등 통지

담보위험에 의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금에 사고발생을 통지한다. 사고발생통지서 접수 후, 기금은 사고발생 경위 및 원인, 담보위험사유, 피약정자의 약관준수 여부 및 손실 경감조치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한다.

2. 손실보조금의 지급신청

피약정자는 손실보조금 지급신청유예기

IV. 손실보조금 지급

손실보조 약정후 해당거래에서 담보하는

〈그림 2〉 손실보조금 지급절차



간(손실발생통지후 1개월) 이후 기금에 손실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손실보조금을 신청하기에 이른 경위를 기재한 서류, 손실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빙서류의 사본 및 기타 참고가 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손실보조금의 지급

기금은 피약정자로부터 손실보조금지급을 신청받은 경우, 거래당사자의 귀책여부를 심사하여 손실액 산정 및 손실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1) 손실액 산정

손실액이란 사고발생으로 피약정자가 입게 되는 경제적 피해액을 말한다. 손실액 산정은 약정사고가 약관에 정하여진 보조할 손실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고인지 여부를 판명하고 만약 보조할 손실의 범위에 해당된다면 이에 따라 지급해야 할 손실보조금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통 사고조사가 완료된 후에 행하게 된다.

손실액 산정에 있어 약정가액 전액이 미결제되는 약정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약정금액 전액을 손실보조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약정가액의 일부에 대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손실액에 보조비율을 곱하여 손실보조금을 산출하게 된다.

(2) 손실보조금 지급

손실보조금 지급액은 발생손실액중 전매처분 등으로 회수되는 금액 등을 차감한 순손실액에 손실보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손실보조금은 지급신청후 3개월 이내 지급한다. 다만, 사고조사 및 지급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정산토록 한다.

4. 회수금의 납부

피약정자가 손실보조금을 신청한 후 보조금을 받기 전에 회수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회수금통지서를 기금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약정자는 손실보조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채권회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회수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1개월내 기금에 이를 통지하고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계산하여 기금에 해당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반환금액은 회수금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잔액중 손실보조금 수령비율(손실보조금수령액/손실액)을 곱하여 산정된다. 